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177 호 2019. 5. 30.(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02호[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10호[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사항 고시]..... 8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11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12호[하천 점용 허가 고시]..... 1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13호[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형도면(변경) 고시]..... 1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16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17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1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102호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 및 중심상업 지역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발전에 기여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매곡동 일원
 - 면적 : 123,712m²
4. 시 행 자 :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박영국 (변경없음)
5. 시행기간 (변경없음)
 - 2009. 3. 19. ~ 2020. 3. 18.
6. 시행방식 : 환지방식 (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 별첨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일로부터 14일간, 북구청 도시과

9.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 생략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052-241-7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 당초 : 중로2-121호선 1m 추가확장

- L=80m, B=6→7m

- 하천제방 상부 2m 보행공간 조성

변경 : 기존 설치된 하천제방 상부 2m 보행공간 재정비 반영

- 변경사유

- 울산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3차변경심의) 결과 반영(2018.04.27.)

■ 사업비 변경

- 당초 : 총사업비 23,450백만원

변경 : 총사업비 25,510백만원

- 변경사유

- 기정 사업비는 2005년 개발계획수립 시 승인받은 것으로 현재 시점 공사비용 상승분(1,245백만원) 과 설계와 상이한 부분들에 대한 실정변경(628백만원) 및 구역 외 공사비(와우시티교) 관련한 토지 보상액 증가(187백만원)등 합계 2,060백만원 증액 요인 발생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지구단위계획 변경

- 당초 : 6.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7/10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나.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1/10이상 3/1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다.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어느 한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1/1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변경 : 6.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7/10 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나.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1/10 이상 3/1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다.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1/1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 변경사유

- 기정과 같이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으로 제한할 경우 건축물의 색채 및 디자인에 제약 사항이 많이 생겨 다양한 건축물을 짓는데 저해 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변경

○ 당초 : 제1장 제2조 (획지의 분할 합병)

환지계획에서 결정되는 획지를 필지의 기본단위로 하며, 다음 면적 범위 내 분할 및 합병 가능하다.

최소 분할 가능면적	최대 합병 가능면적	비 고
330m ²	6,000m ²	최저고도지구, 방화지구

변경 : 제1장 제2조 (획지의 분할 합병)

환지계획에서 결정되는 획지를 필지의 기본단위로 하며, 다음 면적 범위 내 분할 및 합병 가능하다.

최소 분할 가능면적	최대 합병 가능면적	비 고
330m ²	6,000m ²	방화지구

○ 변경사유

-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울고 제2018-119호) 결과 반영하여 '최저 고도지구' 삭제 변경

○ 당초 : 제1장 제4조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 ① 각 구역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한도는 <별표2>를 따르며, 권장사항 반영 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의 범위 내에서 건폐율10%, 용적률 50%를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②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항공법에 의한 공항공도제한높이 이하로 한다.
- ③ 건축물의 최저높이는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15m 이상으로 한다.

변경 : 제1장 제4조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 ① 각 구역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한도는 <별표2>를 따르며, 권장사항 반영 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의 범위 내에서 건폐율10%, 용적률 50%를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②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항공법에 의한 공항공도제한높이 이하로 한다.
- ③ 삭제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 변경사유

-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울고 제2018-119호) 결과 반영하여 삭제 변경

○ 당초 : 제1장 제6조 (건축물의 형태)

- ⑪ 건축물의 장변이 36m 이상일 경우 바람길 및 시각회랑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함을 권장한다.

예)	바람길	

변경 : 제1장 제6조 (건축물의 형태)

① 건축물의 장변이 36m 이상일 경우 바람길 및 시각회랑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함을 권장한다.

예) 삭제

○ 변경사유

- 예시상의 그림으로 인해 바람길의 위치가 건축물의 1,2층 및 중앙부로 확정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예시의 삭제 변경

- 당초 : 제1장 제7조 (건축물의 색채) - 중심상업용지
제2장 제6조 (건축물의 색채) - 준주거용지
제3장 제6조 (건축물의 색채) - 단독주택용지

-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중심상업용지로서 경관이 부드럽고 세련 되도록 한다.
- ②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아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③ 건축물 중 외벽면의 70% 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색은 다음 기준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선택 • 원색과 가까운색(채도가 높은색)은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적 색상은 없으나 건축물의 활력과 장식적 강조 효과를 위하여 가능한 한 저명도, 고채도의 원색에 가까운 색상사용 권장

**변경 : 제1장 제7조 (건축물의 색채) - 중심상업용지
제2장 제6조 (건축물의 색채) - 준주거용지
제3장 제6조 (건축물의 색채) - 단독주택용지**

-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중심상업용지로서 경관이 부드럽고 세련 되도록 한다.
- ②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아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③ 건축물 중 외벽면의 70% 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색은 다음 기준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선택 • 원색과 가까운색(채도가 높은색)은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상 사용 권장하되, 원색(채도가 높은색)은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적 색상은 없으나 건축물의 활력과 장식적 강조 효과를 위하여 가능한 한 저명도, 고채도의 원색에 가까운 색상사용 권장

○ 변경사유

- 기정과 같이 제한할 경우 건축물의 색채 및 디자인에 제약 사항이 많이 생겨 다양한 건축물을 짓는데 저해 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변경

○ 당초 : <별표1> 건축물의 용도 분류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호텔·여관 및 여인숙)	○ (1,2층제외)	×	×	×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	×	×
	그 밖에 유사한 것	○	×	×	×

변경 : <별표1> 건축물의 용도 분류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호텔·여관 및 여인숙)	○ (1,2층객실제외)	×	×	×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	×	×
	그 밖에 유사한 것	○	×	×	×

○ 변경사유

- 일반숙박시설을 '1,2층 제외'로 할 경우 소규모부지의 일반숙박시설 1층에 주차타워, 차량 진출입로, 보행자 공간 및 계단을 설치하고 나면 잔여 공간이 전혀 없고 아울러 조명도 없어 건물 관리 및 야간 도심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1층에는 안내데스크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건물 관리 및 주차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변경함. 또한 2층에는 요즘 숙박시설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부대시설인 조식당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숙박시설에 대한 어두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산뜻한 이미지로 탈바꿈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변경함.

○ 당초 : <별표2>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지정

구 분		중심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건폐율		80%이하	70%이하	60%이하
용적률		700%이하	350%이하	200%이하
높 이	최 고	관련법에 따름	관련법에 따름	관련법에 따름
	최 저	15m이상	-	-

변경 : <별표2>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지정

구 분		중심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건폐율		80%이하	70%이하	60%이하
용적률		700%이하	350%이하	200%이하
높 이	최 고	관련법에 따름	관련법에 따름	관련법에 따름
	최 저	삭제	-	-

○ 변경사유

-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울고 제2018-119호) 결과 반영하여 삭제 변경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110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 년월일	허가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m ²)	허가기간	점용목적	비 고
		주 소	성 명					
2019. 5.24.	2019 -7	울산광역시 복구 산하동 966-1	김명호	울산광역시 복구 산하동 966-1 번지일원	9	변경 전 2015. 1. 1. ~ 2019. 12. 31. 변경 후 2019. 5. 24. ~ 2023. 5. 31	활어도소매 업을 위한 해수인수	기간 변경
2019. 5.24.	2019 -8	울산광역시 복구 화암길 55	김경미	울산광역시 복구 산하동 945 번지일원	12	변경 전 2014 6. 2. ~ 2019. 5. 31. 변경 후 2019. 5. 24. ~ 2023. 5. 31	활어도소매 업을 위한 해수인수	기간 변경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 2019- 11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미라주건설(주) 대표 김선동이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복구 중산동 매곡중산도시개발 사업지구 10블럭 1로트·2로트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 하였기에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 **【붙임1】** 참조

2019년 5월 3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붙임1】

1.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업명칭	매곡중산지구 10블럭 1,2로트 일동미라주아파트(3단지) 신축공사					매곡중산지구 10블럭 1,2로트 일동미라주아파트(3단지) 신축공사					변경없음
사업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매곡중산 도시개발사업지구 10블럭 1,2로트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매곡중산 도시개발사업지구 10블럭 1,2로트					변경없음
사업주체	미라주건설(주) 대표 김선동					미라주건설(주) 대표 김선동					변경없음
사업주체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2008호(우동, 센텀그린타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2008호(우동, 센텀그린타워)					변경없음
시 공 자	(주)일동 대표 김창용					(주)일동 대표 김창용					변경없음
대지면적	17,189.0000 m ²					17,183.0000 m ²					-6 m ² (-0.035%)
건축면적	3,473.7218 m ²					3,473.7218 m ²					변경없음
연 면 적	61,083.1503 m ²					61,279.0822 m ²					+195.9319m ² (+0.32%)
건폐율/용적률	20.21% / 249.23%					20.22% / 249.50%					+0.01% / +0.27%
층수/동수/세대수	지하2층, 지상19~24층 / 주: 8개동, 부속: 8개동 / 411세대					지하2층, 지상19~24층 / 주: 8개동, 부속: 8개동 / 411세대					변경없음
사업규모	형별	세대 수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공급 면적	형별	세대 수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공급 면적	변경없음
	A	88	59.9284	19.2777	79.2061	A	88	59.9284	19.2777	79.2061	변경없음
	B	65	80.3421	21.0354	101.3775	B	65	80.3421	21.0354	101.3775	변경없음
	C	200	84.8941	24.8187	109.7128	C	200	84.8941	24.8187	109.7128	변경없음
	C1	39	84.8963	25.5322	110.4285	C1	39	84.8963	25.5322	110.4285	변경없음
	D	19	104.9972	29.3457	134.3429	D	19	104.9972	29.3457	134.3429	변경없음
	계	411				계	411				변경없음
부대복리시설	구 분	합 계(m ²)				구 분	합 계(m ²)				변경없음
	경비실	28.0800 m ²				경비실	28.0800 m ²				변경없음
	관리사무실	74.9341 m ²				관리사무실	74.9341 m ²				변경없음
	조경시설	4,372.71 m ² (25.44%)				조경시설	4,386.61 m ² (25.51%)				변경없음
	주차장	477대				주차장	477대				변경없음
	경로당	92.1412 m ²				경로당	92.1412 m ²				변경없음
	어린이집	193.4200 m ²				어린이집	193.4200 m ²				변경없음
	주민공동시설	592.8322 m ²				주민공동시설	592.8322 m ²				변경없음
	주민운동시설(외부)	305.2300 m ² (2개소)				주민운동시설(외부)	305.2300 m ² (2개소)				변경없음
	어린이놀이터	643.4000 m ² (2개소)				어린이놀이터	643.4000 m ² (2개소)				변경없음
	-	-				맘스레이션	31.3184m ² (1개소)				+31.3184m ²
	근린생활시설	257.9075 m ²				근린생활시설	257.9075 m ²				변경없음
사 업 비	111,373,595천원					111,373,595천원					변경없음
사업기간	2016. 12 ~ 2019. 7.					2016. 12 ~ 2019. 7.					변경없음
승인조건	"붙임과 같음"					"붙임과 같음"					변경없음

2.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3. 승인관련 서류 : 복구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축주택과(☎241-80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112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동 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성 영 석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21길 10-2

3. 점용 목적 및 개요

토지의 점용(가족 단합 행사 개최)

4. 점용 지역의 위치, 면적 및 채취량

가. 위치 : 명촌동 794-13번지 일원

나. 면적 : 4,242

5.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2019. 5. 30. ~ 2019. 5. 3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113호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형도면(변경)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87호(2019.5.2.)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I.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생략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생략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

■ 도로 총괄조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노선수 (개소)	연장 (m)	노선수 (개소)	연장 (m)	노선수 (개소)	연장 (m)
합 계	50	11,374 (8,678)	13	2,815 (2,071)	22	5,509 (5,474)	15	3,050 (1,133)
대로	3	2,297 (380)	-	-	-	-	3	2,297 (380)
중로	11	3,397 (2,618)	4	1,954 (1,210)	5	1,076 (1,041)	2	367
소로	36	5,680	9	861	17	4,433	10	386

주) ()는 지구내 사업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41	25~ 30(3)	보조 간선 도로	1,180 (153)	대2-31	중2-154	일반 도로		'00.3.4 울고33호	
기정	대로	3	42	25	보조 간선 도로	890	대2-18	대2-31	일반 도로		'00.3.4 울고33호	
기정	대로	3	90	25	보조 간선 도로	227	대2-18	중1-311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8 3호	
기정	중로	1	71	20~ 23	집산 도로	517 (25)	중1-312	대3-38	일반 도로		'00.3.4 울고33호	
기정	중로	1	175	20	보조 간선 도로	252	대3-90	중3-215	일반 도로		'10.6.30 울고 112호	
기정	중로	1	311	20	보조 간선 도로	153	대3-90	중2-124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8 3호	
기정	중로	1	312	20~ 23	보조 간선 도로	1,032	대3-41	대3-90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8 3호	
변경	중로	1	312	20~ 23	보조 간선 도로	1,032	대3-41	대3-90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8 3호	가감속 차로 설치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24	15	집산 도로	344 (309)	중1-311	41호공원 (중산공원)	일반 도로		'00.3.4 울고33호	
기정	중로	2	126	15~20 (7.5~ 12.5)	집산 도로	420	중1-71	대3-41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456	15	국지 도로	63	중1-312	소2-14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중로	2	457	15	집산 도로	120	중1-312	소2-351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중로	2	458	15	집산 도로	129	중1-312	중3-347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중로	3	346	12	집산 도로	152	중2-124	중3-303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중로	3	347	12	집산 도로	215	중2-457	중2-458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1	73	10	국지 도로	245	중1-311	중1-312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변경	소로	1	73	10	국지 도로	245	중1-311	중1-312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선형경
기정	소로	1	74	10	국지 도로	25	중1-312	소2-355	특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1	보1	10	보행자 전용 도로	28	중3-347	소2-354	특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1	보2	10	보행자 전용 도로	40	소2-355	소2-354	특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1	보3	10	보행자 전용 도로	25	중1-312	소2-355	특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1	보4	10	보행자 전용 도로	25	중1-312	소1-77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1	75	10	국지 도로	25	중1-71	소2-356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1	76	10	국지 도로	233	중1-312	중2-126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1	77	10	국지 도로	215	소1-76	소2-356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주) ()는 지구내 사업임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46	8	국지 도로	529	중2-124	소1-73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47	8	국지 도로	273	소2-346	소3-44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48	8	국지 도로	101	중3-346	소1-73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49	8	국지 도로	86	소1-73	소2-346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50	8	국지 도로	101	중3-347	소2-353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51	8	국지 도로	88	중3-347	소2-353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52	8	국지 도로	215	소2-351	소2-353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53	8	국지 도로	494	중3-347	소2-355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54	8	국지 도로	442	소2-355	소2-353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55	8	국지 도로	585	소2-353	소2-354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56	8	국지 도로	200	중2-126	소1-77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57	8	국지 도로	112	소2-360	소1-77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58	8	국지 도로	199	중2-126	소1-77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59	8	국지 도로	199	중2-126	소1-77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60	8	국지 도로	316	소2-356	소2-362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61	8	국지 도로	201	중2-126	소2-362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62	8	국지 도로	292	중2-126	소1-76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3	44	6	국지 도로	26	소1-73	소2-347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3	보33	2~4	보행자 전용 도로	119	중1-312	소공원 87	특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3	보34	4	보행자 전용 도로	40	소2-355	소2-354	특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3	보35	4	보행자 전용 도로	30	소2-354	소2-350	특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3	보36	4	보행자 전용 도로	45	소2-352	소2-353	특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3	보37	4	보행자 전용 도로	28	대3-41	소2-355	특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3	보38	4	보행자 전용 도로	22	대3-41	소2-362	특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3	보39	4	보행자 전용 도로	26	중1-71	소2-356	특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3	보40	4	보행자 전용 도로	25	대3-41	소2-354	특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3	보41	4	보행자 전용 도로	25	대3-41	소2-362	특수 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주) ()는 지구내 사업임

- 2)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 3) 공원 결정(변경)조서 - 생략
- 4)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 5) 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 6) 학교 결정(변경)조서 - 생략
- 7) 하천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 8) 유수지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 9) 구역외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생략

4. 가구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생략
- 2) 공동주택용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²)	
	계	-	75,678	-	-	75,678	
기정	B1	B1	25,867	-	북구 중산동 174-5일원	25,867	
변경	B1	B1	25,333	-	북구 중산동 174-5일원	25,333	
기정	B2	B2	50,791	-	북구 중산동 12일원	50,791	
변경	B2	B2	50,345	-	북구 중산동 12일원	50,345	

- 3) 준주거용지(변경없음) - 생략
- 4) 학교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7. 매곡중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변경없음) - 생략

8.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생략

II. 도시관리계획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형도면고시 도면 : 게재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11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로 45 외 5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5. 3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1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중산지 구 10B 1L, 2L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로 45	2019-05-30	법정동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3-12-30
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718-3 외 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 11길 10	2019-05-30	인근 도로명과 연계하여 일련번호 방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로명 부여	2019-04-25
3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940-25 외 1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길 61	2019-05-30	행정구역인 산하동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25-8	울산광역시 북구	당수골 15길 72	2019-05-30	당수나무가 있는 당수골 명칭 사용하여서 도로명을 부여함.	2017-05-04
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23-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 곡1로 103	2019-05-30	호계·매곡지구 명칭 사용을 사용하여서 도로명을 부여함	2017-05-04
6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23-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 곡1로 103	2019-05-30	호계·매곡지구 명칭 사용을 사용하여서 도로명을 부여함	2017-05-04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117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수박골1길 10-1	호계동 719-1	2019. 5. 30.	건축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5. 30.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